B - 6 - 2011

부선 안전작업 기술지침

2011. 12.

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

안전보건기술지침의 개요

o 작성자 : 정진구

o 개정자: 산업안전보건연구원 안전시스템연구실

o 제·개정 경과

- 2002년 6월 기계안전분야 기준제정위원회 심의

- 2003년 5월 총괄기준제정위원회 심의

- 2011년 12월 기계안전분야 제정위원회 심의(개정, 법규개정조항 반영)

- o 관련규격 및 자료
 - 선원의 안전작업시행을 위한 지침(한국선급협회)
 - 부선의 구조 및 설비 등 기준(해양수산부 고시 제1999-106호)
 - ILO 선상안전수칙(한국해사문제연구소)
 - 강제부선 규칙(한국선급)
 - 부선예항 검사규칙(한국선급)
- 관련 법규·규칙·고시 등
 - 산업안전보건기준에관한규칙 제2편 제6장 제2절 항만하역작업
- 기술지침의 적용 및 문의

이 기술지침에 대한 의견 또는 문의는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홈 페이지 안전보건기술지침 소관 분야별 문의처 안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
공표일자 : 2011년 12 월 29 일

제 정 자 :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이사장

B - 6 - 2011

부선 안전작업 기술지침

1. 목 적

이 지침은 산업안전보건기준에관한규칙(이하 "안전보건규칙"이라 한다) 제2편 제6장 제2절 항만하역작업의 규정에 의거 부선에서의 안전작업에 관한 기술적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2. 적용범위

이 지침은 일반부선에서 수행하는 모든 작업에 적용한다.

3. 용어의 정의

- (1)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.
- (가) "부선"이라 함은 자력 항행 능력이 없어 다른 선박에 의하여 끌리거나 밀려서 항행하는 선박으로 하천이나 항만에서 곡물, 석탄, 모래 및 각종 장비나 철 구조물 등의 화물운송이나 하역작업에 사용되는 무동력선을 말한다.
- (나) "계류"라 함은 통상적으로 부두, 안벽에 접안(Alongside) 또는 묘박 (Anchoring)하거나 브이(Buoy) 등 고정된 부유물 등에 선박을 고정시키는 것을 말한다.
- (2) 그 밖에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이 지침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산업안전보건법, 같은 법 시행령, 같은 법 시행규칙 및 안전보건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.

4. 부선 운반시 점검사항

4.1 부선책임자의 부선설비 점검사항

B - 6 - 2011

- (1) 부선의 선체외판, 갑판, 수밀격벽 등의 주요부재와 수선하부 등 균열, 파손여부 확인
- (2) 적정한 방현재(Fender) 등의 정위치 부착여부 확인
- (3) 계류관련장치의 성능 확인
- (4) 해치커버, 맨홀커버 등 수밀성 상태 확인
- (5) 만재흘수선 및 적재량의 표시 확인
- (6) 모든 구획에 대한 측심 및 빌지의 배출여부 확인
- (7) 폭로부의 모든 개구부, 선외배출부, 해수흡입밸브 및 이들의 폐쇄장치의 작동상태 확인
- (8) 계류용 섬유로프 또는 와이어로프의 준비상태 확인
- (9) 유인부선인 경우에는 탑승자를 위한 구명장비의 준비상태 확인
- 4.2 부선책임자의 적재물 점검사항
 - (1) 적재물에 대한 운반선 선정의 적정성여부 확인
 - (2) 적재물의 과적여부 확인
 - (3) 파랑으로 인한 선체의 요동으로 적재물의 전도, 탈락 등 예방조치 확인
 - (4) 운반거리, 해상조건 및 적재물의 크기 또는 무게에 대한 예선과 부선의 용량 적정여부 확인
 - (5) 예선의 로프 이상여부 및 부선과의 연결방법 확인

B - 6 - 2011

- (6) 적재, 적하시 책임자의 현장 관리감독여부 확인
- (7) 적재, 적하 방법 사전 검토여부 확인

5. 접안작업 안전수칙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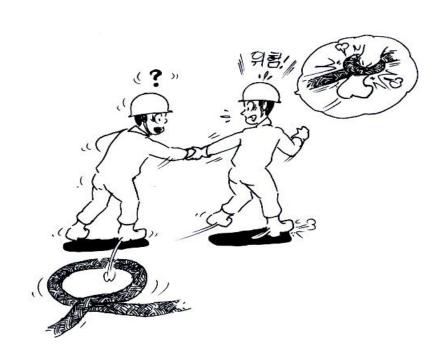
- (1) 작업책임자는 작업자에게 작업방법, 작업순서, 용구사용법 및 주의사항을 교육하여야 한다.
- (2) 작업책임자는 앵커, 와이어로프, 체인의 손상 및 결함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정비·점검하여야 한다.
- (3) 앵커를 올리거나 내리는 작업은 책임 있는 사람의 감독 하에 이루어져야 한다.
- (4) 접안작업 담당자는 로프을 던지기 전에 위험 반경 내에 사람이 있는지 확인하여야한다.<그림1>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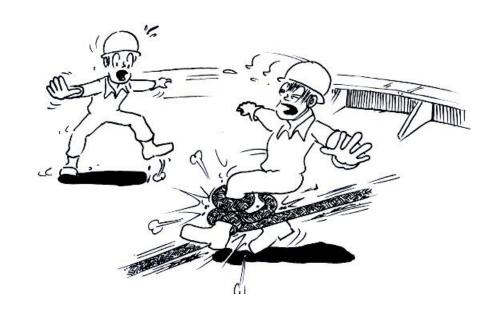
KOSHA GUIDE B - 6 - 2011

<그림 1> 로프회전 반경 내에 접근금지

(5) 접안작업 참가자는 자신이 안전한 위치에 있는가를 확인하여야 하고 자신의 위치에 대하여 경계를 한다. <그림 2>, <그림 3>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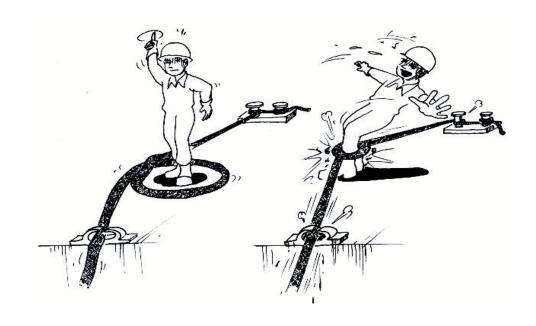
<그림 2> 동아리져 있는 로프안쪽에 발을 딛지 말 것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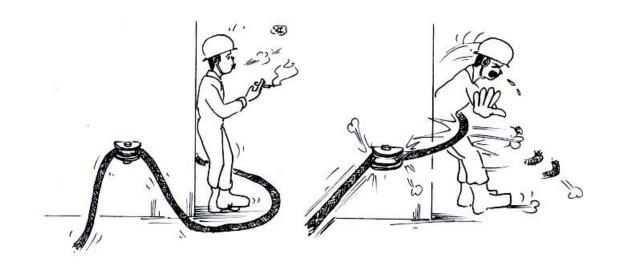
KOSHA GUIDE B - 6 - 2011

<그림 3> 엉클어진 로프에 발을 딛지 말 것

(6) 작업자는 장력을 받고 있거나 사용중인 섬유로프나 와이어로프를 가로질러 서 이동하거나 서 있어서는 안되며 가능한 섬유로프나 와이어로프가 장력 을 받고 있는 동안에는 안전한 장소에 서 있어야 한다. <그림 4>, <그림 5>



<그림 4> 로프사이 안쪽에 위치하지 말 것



<그림 5> 굽어진 로프 안쪽에 위치하지 말라

- (7) 작업책임자는 작업 중 흘수변화 및 조석변화(간만의 차)에 따른 접안로프의 장력을 일정하게 유지하여야 한다.
- (8) 작업책임자는 긴급 시를 대비한 적정한 예비로프가 준비되어있는지 확인하여야 한다.
- (9) 작업자는 안전모, 안전화, 해당작업에 적합한 안전장구 및 복장을 착용하여 야 한다.
- (10) 작업책임자는 접안완료 후 정리정돈을 확실히 하고 로프 등을 바르게 감 아 두었는지 확인하여야 한다.
- (11) 작업책임자는 로프의 어느 부분이 무리한 장력을 받고 있으면 장력을 줄이기 위한 즉각적인 조치를 하여야 한다.
- (12) 작업책임자는 외부 접촉 또는 충격에 의한 부선의 안전을 위하여 적정한 위치에 적정량의 방현재(Fender)를 설치하여야 한다.
- (13) 작업자간의 신호는 확실하게 전달 되도록 사전에 정하고 전원이 숙지하여

B - 6 - 2011

야 한다.

(14) 작업책임자는 장비 승강용 브리지의 작동상태, 선체와의 연결부 균열여부 및 와이어로프 등의 상태를 수시로 확인하여야 한다.

6. 묘박(Anchoring)작업

- (1) 묘박을 하기 위한 앵커, 와이어로프, 체인 또는 섬유로프의 손상 및 결함여부를 정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한다.
- (2) 결함이 있는 앵커, 와이어로프 및 체인은 사용해서는 아니되며 자격이 부여 된 사람이 수리 또는 제거하여야한다.
- (3) 앵커 및 와이어로프는 스토퍼 또는 이와 동등한 장치로 고정하여야한다.
- (4) 앵커를 올리거나 내리는 작업은 부선책임자(선주) 감독 하에 이루어져야 한다.
- (5) 앵커를 올리거나 내리기 전에는 작업장주변에 불필요한 사람은 없으며 부선 주변에 장애물이 없는가를 확인하여야 한다.
- (6) 윈치, 윈드라스 작동상태, 스토퍼기능 상태를 수시로 점검하여야 한다.
- (7) 체인의 상태를 수시로 확인하고 연결링크는 주기적으로 교체하여야 한다.

7. 갑판작업 안전수칙

7.1 공 통

(1) 작업을 위하여 처음으로 승선한 사람에 대해서는 특별안전교육 실시후 작업에 배치시켜야 한다.

B - 6 - 2011

- (2) 신체부상이나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위험요소를 제거한다.
- (3) 특별히 위험이 존재하는 곳, 흡연이 금지된 장소나 보호장비를 착용하여야 하는 곳에는 적절한 주의 경고문이 게시되어 있어야 한다.
- (4) 화물이나 장비 등을 이동 할 때에는 부선의 요동에 유의하여 이동한다.
- (5) 갑판 통행에 장애가 되는 돌출물은 사고 방지를 위하여 식별이 용이하게 표시하며 작업자에게 주의를 확기시켜야 한다.
- (6) 악천후에는 특별한 주의가 필요하며 필요시 통행로에 따라 구명줄이 장치되어야 한다.
- (7) 비상시를 대비하여 구명환 및 구명용로프를 구비하여야한다.
- (8) 탱크 내부 출입시는 맨홀 개방 후 충분한 환기를 실시하고 출입하여야한다.
- (9) 인화성물질, 폭발성물질, 유독성물질 및 환경오염물질 등 위험물질을 취급할 경우에는 안전조치후 작업하여야 한다.

7.2 부선 책임자(선주 또는 부선사용자) 임무

- (1) 책임자는 안전업무를 수행하는데 충분한 자격이 있어야한다.
- (2) 책임자는 부선의 안전 및 작업자의 안전보건을 위해 가능한 한 다음 시설을 갖추어야한다.
- (가) 구급약/구급장비.
- (나) 배수설비
- (다) 위생설비.
- (라) 구명장구 및 소방설비
- (마) 거주설비(무인경우제외)
- (바) 전기설비

B - 6 - 2011

- (사) 조타, 계선과 양묘설비
- (아) 최대탑재중량(표시)
- (자) 만재흘수(표시)
- (3) 부선에서 모든 작업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사항은 책임자가 검토를 하여야 한다.
- (4) 책임자는 각종 작업이 적절하게 실시되도록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여야하며 작업의 특수성, 표준작업방법, 취급하는 화물(장비)의 특성과 상태, 유해위 험사항과 대피방법, 중점실시사항 등을 포함하여 교육하여야한다.
- (5) 책임자는 상·하역 작업시작 전 사용되는 기계기구 및 장비 등의 상태를 점검하여 이상이 없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.
- (6) 책임자는 작업자에게 안전모, 안전화 등 적절한 개인용 안전장구를 지급하여야 한다.
- (7) 책임자는 안전에 관련된 보고가 있으면 어떠한 결함이라도 가능한 빨리 통제 및 조치하여야 한다.
- (8) 책임자는 작업자가 판단이나 행동의 실수로 중대한 재해를 일으킬 우려가 있는 장소의 안전확보를 위하여 안전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.
- (9) 책임자는 안전보건활동의 기본인 정리정돈의 실시상태를 확인하여야 한다.
- (10) 책임자는 긴급시를 대비한 적정한 예비로프 및 인명구조장비를 준비하여 야 한다.
- (11) 책임자는 조명시설이 없는 야간 작업은 금하여야 한다.
- (12) 책임자는 폭풍, 폭우 및 폭설 등의 악천후로 인하여 작업에 위험이 예상될 때는 즉시 작업을 중단시키며 필요시 부선을 안전한 장소로 피항시켜야 한다.

B - 6 - 2011

- (13) 책임자는 수리, 보수시 작업자 및 승선원의 안전을 위해 작업안전수칙 준수여부를 수시로 확인하여야 한다.
- (14) 책임자는 작업자의 보호장비가 손상이나 결함이 있을 때는 즉시 교체해 주어야 한다.
- (15) 책임자는 유인부선인 경우에는 승선원의 취사용 물을 충분히 공급하고 적절한 음식물 보관시설을 갖추어야 한다.

7.3 작업자 임무

- (1) 작업자는 작업중 모든 안전수칙을 준수하여야 하며 작업에 필요한 개인 안 전장구를 착용 후 작업에 착수하여야 한다. 또한, 각자 책임한도 내에서 자 신이나 다른 사람의 안전을 유지하는데 스스로 노력하여야 한다.
- (2) 작업자는 허가 없이 안전장치에 손을 대거나 제거하거나 작동시켜서는 아니 된다.
- (3) 작업자가 작업상 필요한 보호장비에 대해서는 사전에 사용방법의 교육을 받아야 한다.
- (4) 작업자는 보호장비가 손상이나 결함이 있을 때는 즉시 책임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
- (5) 작업자는 부선의 동요로 인하여 미끄러지거나 중심을 잃고 넘어질 위험에 대하여 항상 주의를 하여야 한다.
- (6) 작업자는 뱃전에서 작업할 때는 안전벨트를 착용하여야 하며 필요시는 구명동의를 착용하고 작업하여야 한다.
- (7) 작업자가 갑판 상에서 물건을 이동할 때에는 바닥의 미끄러움에 항상 유의하여야 한다.
- (8) 작업자가 음주 후에 탑승하여서는 절대 아니 된다.(유인 부선인 경우 거주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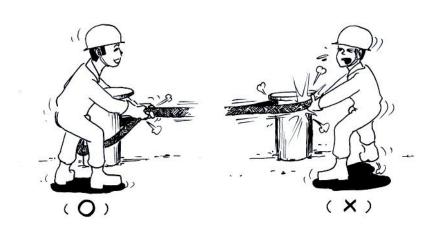
B - 6 - 2011

구내에서도 금주가 지켜져야 한다.)

8. 와이어로프, 섬유로프 사용 안전수칙

8.1 공통

- (1) 로프는 용도에 맞는 재료, 구조 및 강도를 가져야 한다.
- (2) 모든 로프는 사용 전에 이상유무가 확인되어야 한다.
- (3) 로프를 보수한 후에는 사용 전에 적절한 조사 및 시험을 하여 안전을 확인 후 사용한다.
- (4) 로프는 과도한 열이나 유해한 화학물질에 노출되어서는 아니된다.
- (5) 로프에 과도한 부하를 가하거나 날카로운 물체 등에 접촉되어 로프가 손상 되는 것을 방지하여야 한다.
- (6) 로프를 감을 때는 적합한 방법으로 감아서 킹크가 생기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.
- (7) 뱃전에서의 작업시 로프가 절단될 위험에 대처하여야 한다.
- (8) 로프를 손으로 잡을 때에는 하중을 받지 않는 쪽을 잡아야 한다. <그림 6>



B - 6 - 2011

<그림 6> 로프는 하중을 받는 옆쪽을 잡아라

8.2 와이어로프

(1) 와이어로프를 다룰 때에는 장갑을 착용한다. <그림 7>



<그림 7> 와이어로프 작업시는 가죽제 장갑을 착용

- (2) 와이어로프에는 일정한 주기로 적당한 윤활제를 바른다.
- (3) 헐겁거나 찢어진 스트랜드 혹은 내부적인 손상이 없는가를 확인하기 위해 정기적인 검사를 하여야 한다.

8.3 섬유로프

- (1) 거친 표면 또는 모래 등에 접촉되어 로프에 손상이 발생되지 않도록 한다.
- (2) 마찰열로 로프의 스트랜드가 가열되어 부분적으로 녹거나 고착되지 않도록 한다.
- (3) 마찰열로 인해 가열된 로프는 손으로 잡지 않아야 한다.
- (4) 로프가 유해한 화학물질에 노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.

9. 승ㆍ하선 안전수칙

B - 6 - 2011

- (1) 현문은 조석간만의 차에 의한 동요에 견딜 수 있도록 조정되어져야 한다.
- (2) 작업자가 작업장(부두)과 부선 사이에서 추락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시 뱃전 사다리 아래에 안전네트를 설치한다.
- (3) 작업자는 승인된 통로로 부선에 승하선 하여야한다.
- (4) 음주상태이거나 정상적인 건강상태를 유지하지 못한 작업자의 승선을 금한다.

10. 화재예방

- (1) 화재 발생시 즉시 사용할 수 있도록 적절한 소화기가 준비되어 있어야한다.
- (2) 방화장치, 소화기구 등은 적절한 장소에 배치하여 유사시 즉시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.
- (3) LPG, 각종 연료유 등의 보관장소 주변에는 금연 등의 경고문을 게시하여야 한다.
- (4) 작업 중 사용된 기름 묻은 걸레 등은 오염되고 더러운 것이 축적되어 자연 발화가 되지 않도록 조치한다. 특히 히터, 스팀배관 등 가까운 곳에 보관하 지 말아야 한다.
- (5) 부선수리에 따른 화기작업시에는 선주 등 관리자가 반드시 입회한 상태에서 소화기, 물, 불받이포 등을 준비하고 주위의 위험물 여부를 확인한 후에 작업하도록 하여야 한다.
- (6) 유인부선의 경우에는 특히 다음사항에 유의하여야 한다.
- (가) 숙소의 모든 외부문과 창틀은 열고 닫을 수 있어야 한다.
- (나) 냉방장치의 흡입구는 적재된 유해·위험물질의 증기가 흡입되지 않도록 안전한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.
- (다) 모든 장소에서 금연하여야 한다.

B - 6 - 2011

- (라) 비상탈출이 가능하도록 준비되어 있어야 한다.
- (바) 취사용 가스는 외부에 보관하고 전도방지조치 및 차광조치를 하여야 한다.

11. 산소결핍재해 예방

- (1) 부선선체 탱크내부 등 밀폐공간을 출입시에는 탱크맨홀 개방후 이동식팬 등을 활용하여 탱크내부를 충분히 환기하고 산소농도를 측정한 후에 출입하도록 하여야 한다.
- (2) 선체탱크 등 밀폐공간을 출입시에는 외부에 감시자를 배치하여야 한다.

12. 자체 안전관리계획 수립 및 집행

부선책임자는 아래사항을 포함한 자체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운영한다.

- (1) 안전 및 환경보호(오염 등)에 관한 사항
- (2) 위험물 취급 안전관리조직의 운영 및 업무에 관한 사항
- (3) 위험물 취급자에 대한 안전교육 및 훈련에 관한 사항
- (4) 소방시설, 안전장비 및 오염방제장비 등 안전시설에 관한 사항
- (5) 위험물취급작업 기준 및 안전작업요령에 관한 사항
- (6) 작업장(정박지 등)주변 안전에 관한 사항
- (7) 비상대응 훈련내용 및 실시방법
- (8) 비상사태 발생시 지휘체계 및 비상조치계획
- (9) 위험물 특성에 맞는 소화장비의 비치

B - 6 - 2011

- (10) 부선과 육상간의 통신수단 확보 또는 확보계획
- (11) 안전 작업을 위한 장비종류별 고정방법(크레인, 포크레인 등)
- (12) 장비탑재 및 운송방법

<부 록 1 >

부선 종류

- 1.1 기능별 종류
 - (1) 압항 부선 : 선박의 선체와 연결하여 운행하는 부선
 - (2) 비압항 부선 : 압항 부선 이외의 부선
- 1.2 용도별 종류
 - (1) 일반부선 : 공사작업용 부선, 모래운반용 부선, 철강재운반용 부선 등
 - (2) 유조부선 : 석유제품 운반용 부선, 원유운반용 부선, 액체 화학품 운반용 부선, 액화가스용 부선 등
 - (3) 폐기물운반 부선 : 폐기물운반용 부선, 분뇨 운반용 부선 등

B - 6 - 2011

(4) 토운부선 : 준설토 운반용 부선 등

(5) 해저조망 부선 : 해저 잠수 조망용 부선 등

1.3 승선요원 유무에 따른 분류

(1) 유인부선 : 선루 또는 갑판실에 거주할 수 있는 거주설비를 갖춘 부선

(2) 무인부선: 거주설비가 없는 부선

< 부록 2 >

예선 선장 점검사항

- (1) 예인의 선장은 사전에 운반항로를 검토한다.
- (2) 예선과 부선 간의 간격은 적당한지 확인한다.
- (3) 야간 예인시 부선에 필요한 표시등은 준비되어있는지 확인한다.
- (4) 무인부선일 경우 인원을 승선시키지는 않았는지 확인한다.
- (5) 유인부선일 경우 예선의 관계자와 부선의 탑승자간의 각종신호 및 긴급사항 연락방법은 사전에 준비되어 있는지 확인한다.(통신 및 그밖의 수신호등)
- (6) 유인부선일 경우 예인선 선장은 부선의 승조원을 확인한다.